

심 사 보 고 서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5
----------	-----

2020. 10. 23.(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0월 16일

-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배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은 충북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이 세계적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유치함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로 지역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은 도 주요 공공기관의 중부권 편중으로 인

한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균형발전을 기하고, 연인원 1만 3천여명 교육생('19년 기준)의 북부권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함께하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북부권에 신축하고자 함.

-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은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 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19년~22년 500ha) 매입 추진하려는 사업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 위 치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16-1 일원(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매입규모 : 543,145m²
- 사 업 비 : 1,600억원(도 800, 청주시 800)

②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 위 치 : 제천시 신백동 27-1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신축규모 : 7,739.48m²
 - ※ 3개동 : (본관동) 지하1층 지상3층 (식당동) 지상3층 (강당동) 지상1층
 - ※ 주요시설 :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식당, 직원숙소 등
- 사 업 비 : 404억원 ※ 총사업비 467억원(토지보상비 63억원 제천시 부담)
 - ※ 신축예정부지(101,086m²)는 제천시에서 무상임대 제공
(道-제천 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업무협약, '20.7.20.)

③ 도유립 행정재산 취득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산4-2 등 14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매입규모 : 745,546m²
- 사 업 비 : 22억원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 첫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의 건은,

- 지난 3월 과기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유치 공고에 4개 시·도가 경합하여 충북 청주로 최종 결정된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기초과학의 육성은 물론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제조강국,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임
- 건립 부지는 오창읍 후기리 산16-1 일원(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이며, 부지규모는 543,145m²으로,
- 부지매입 비용은 1,600억원으로 도부담이 800억원이며 청주시 부담이 800억원 임
- 충북연구원이 분석한 경제효과를 보면, 5조 2,8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7,94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 85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것으로 예측하여 부지 취득의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둘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의 건으로,

- 충청북도는 현재 전체인구(164만명)의 52%, 제조업 종사자 수의 42.8%인 86만명이 청주권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며,
- 또한, 주요 공공기관의 중부권 편중으로 인한 남·북부권의 상대적 소

외감 해소와 균형발전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 제천시 1인당 GRDP가 23백만원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10번째인 대표적 저발전 지역에 해당하며,
- 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과 공약사업으로 자치연수원 이전 계획을 추진중임.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자료를 보면,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비용(B/C Ratio) 0.2189, 내부수익률(IRR) -6.17%, 현순재가치(NPV) -40,239백만원으로 매우 낮음
 -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충북지역균형발전계획,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의 균형발전에 따른 권역별 추진사업 등 법·제도적 부합성에 일치하며, 자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의 시급성, 지역과급효과 등에 부합하지만, 지역균형발전에서의 효과성에 따른 남부권 반대여론과 사업추진 상에서의 토지수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건립은 경제성은 없으나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과급효과, 그리고 자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음
- 이에 따라 북부권의 균형발전 요구 수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제천)이전 사업은 필요하나, 향후 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기존 자치연수원 활용계획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셋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은,

-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

의 안정적인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2019년~2022년 500ha)매입하려 하는 것으로,

- 현재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 30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였으며, 2021년에도 22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부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54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10월 5일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45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은 충북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이 세계적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둬, 향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로 지역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은 도 주요기관의 중부권 편중으로 인한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균형발전**을 기하고, 연인원 1만3천여명 교육생('19년 기준)의 북부권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함께하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북부권에 신축하고자 함.
-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은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19년~22년 500ha)** 매입하려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 위 치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16-1 일원(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매입규모 : 543,145㎡
- 사 업 비 : 1,600억원(도 800, 청주시 80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 위 치 : 제천시 신백동 27-1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신축규모 : 7,739.48㎡
 - ※ 3개동 : (본관동) 지하1층 지상3층 (식당동) 지상3층 (강당동) 지상1층
 - ※ 주요시설 :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식당, 직원숙소 등
- 사 업 비 : 404억원 ※ 총사업비 467억원(토지보상비 63억원 제천시 부담)
 - ※ 신축예정부지(101,086㎡)는 제천시에서 무상임대 제공
(道-제천 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업무협약, '20.7.20.)

《도유립 행정재산 취득》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산4-2 등 14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매입규모 : 745,546㎡
- 사 업 비 : 22억원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1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	1,288,691	162,187,359			2	1,288,691	162,187,359
		건물	1	7,739.48	40,386,000			1	7,739.48	40,386,000
		기타								
	매입	토지	2	1,288,691	162,187,359			2	1,288,691	162,187,359
		건물	1	7,739.48	40,386,000			1	7,739.48	40,386,000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2건	1,288,691	162,187,359					
	건물	1건	7,739.48	40,386,000					
	기타								
1	토지	73필지	543,145	160,000,000	21년(계약) 27년(취득)	오창 다목적 가속기 부지	방사광 확보	원건설	매입
		후기리 산16-1	32,746.4	9,496,456	“	“	“	“	“
		후기리 산16-2	3.0	900	“	“	“	“	“
		후기리 산17	7,588.0	2,276,400	“	“	“	“	“
		후기리 산18-1	75,782.0	22,035,930	“	“	“	“	“
		가좌리 353	202.0	60,600	“	“	“	“	“
		가좌리 364	277.1	83,130	“	“	“	“	“
		가좌리 365	883.7	265,110	“	“	“	“	“
		가좌리 366	565.4	169,620	“	“	“	“	“
		가좌리 367	574.1	172,230	“	“	“	“	“
		가좌리 368	292.9	87,870	“	“	“	“	“
		가좌리 369	1,129.9	338,970	“	“	“	“	“
		가좌리 370	279.3	83,790	“	“	“	“	“
		가좌리 382	324.9	97,470	“	“	“	“	“
		가좌리 383	585.0	175,500	“	“	“	“	“
		가좌리 383-1	390.0	117,000	“	“	“	“	“
		가좌리 384	961.9	288,570	“	“	“	“	“
		가좌리 385	527.6	158,280	“	“	“	“	“
		가좌리 387	411.1	123,330	“	“	“	“	“
		가좌리 388	641.0	192,300	“	“	“	“	“
가좌리 389	96.0	28,800	“	“	“	“	“		
가좌리 390	631.0	189,300	“	“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토지	가좌리 391	66.0	19,800	21년(계약) 27년(취득)	오창 다목적 방시광 가속기 부지 확보	원건설	매입
		가좌리 392	73.0	21,900	"	"	"	"
		가좌리 393-1	912.0	273,600	"	"	"	"
		가좌리 393-2	1,763.2	528,960	"	"	"	"
		가좌리 394	615.0	184,500	"	"	"	"
		가좌리 395	62.2	18,660	"	"	"	"
		가좌리 571	2,340.1	702,030	"	"	"	"
		가좌리 572	151.1	45,330	"	"	"	"
		가좌리 592	246.7	74,010	"	"	"	"
		가좌리 산9-1	3,361.2	1,008,360	"	"	"	"
		가좌리 산12-1	31,481.7	9,129,693	"	"	"	"
		가좌리 산12-2	3.0	900	"	"	"	"
		가좌리 산13	33,359.0	9,674,110	"	"	"	"
		가좌리 산13-1	268.0	80,400	"	"	"	"
		가좌리 산14	21,818.0	6,545,400	"	"	"	"
		가좌리 산14-1	200.0	60,000	"	"	"	"
		가좌리 산14-2	83.0	24,900	"	"	"	"
		가좌리 산15	14,971.0	4,491,300	"	"	"	"
		가좌리 산15-1	268.0	80,400	"	"	"	"
		가좌리 산15-2	11,079.3	3,323,790	"	"	"	"
		가좌리 산16	28,959.0	8,687,700	"	"	"	"
		가좌리 산17	4,026.6	1,207,980	"	"	"	"
		가좌리 산21	1,564.4	469,320	"	"	"	"
		가좌리 산22	116.2	34,860	"	"	"	"
		후기리 253-8	1,118.1	335,430	"	"	"	"
		후기리 253-9	208.0	62,400	"	"	"	"
후기리 257	377.9	113,370	"	"	"	"		
후기리 258	3,418.0	1,025,400	"	"	"	"		
후기리 259	4,694.0	1,408,200	"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토지	후기리 260	860.0	258,000	21년(계약) 27년(취득)	오창 다목적 방시광 가속기 부지 확보	원건설	매입
		후기리 261	4,717.0	1,415,100	“	“	“	“
		후기리 262-1	2,370.0	711,000	“	“	“	“
		후기리 262-2	3,540.0	1,062,000	“	“	“	“
		후기리 364	1,947.0	584,100	“	“	“	“
		후기리 365	2,454.0	736,200	“	“	“	“
		후기리 366	13.8	4,140	“	“	“	“
		후기리 602	3,894.5	1,168,350	“	“	“	“
		후기리 621	650.5	195,150	“	“	“	“
		후기리 산18-1	28,850.1	8,366,529	“	“	“	“
		후기리 산18-3	298.0	89,400	“	“	“	“
		후기리 산18-4	2,737.6	821,280	“	“	“	“
		후기리 산23	41,962.1	12,168,951	“	“	“	“
		후기리 산24	20,628.0	6,188,400	“	“	“	“
		후기리 산25-1	19,495.2	5,848,560	“	“	“	“
		후기리 산25-2	1,983.0	594,900	“	“	“	“
		후기리 산28-1	56,077.9	16,262,591	“	“	“	“
		후기리 산28-6	12,072.4	3,621,720	“	“	“	“
		후기리 산29	3,516.8	1,055,040	“	“	“	“
		후기리 산30-1	30,897.9	9,269,370	“	“	“	“
	후기리 산31-1	4,243.1	1,272,930	“	“	“	“	
후기리 산31-4	302.7	90,810	“	“	“	“		
후기리 산31-5	7,137.4	2,141,220	“	“	“	“		
	건물							
	기타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2	토지							
	건물	제천시 신백동 27-1일원	7,739.48	40,386,000	2023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북부권 이전	-	신축
	기타							
3	토지	14필지	745,546	2,187,359	2021	도유림 확대조성	사유지	매입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산4-2	4,610	101,430	"	"	고복임 외 8명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64-3	546	24,360	"	"	김홍순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70-1	172	8,410	"	"	서수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70-3	264	19,360	"	"	서수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0	233	17,090	"	"	이규창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2	1,128	81,350	"	"	지병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7-4	136	9,970	"	"	여형준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3	1,287	99,100	"	"	지병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4	1,330	199,950	"	"	한의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8-1	1,440	79,200	"	"	고복임 외 8명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8-2	62	4,550	"	"	여형준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8-3	324	19,800	"	"	고복임 외 8명	"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산24-1	329,370	966,210	"	"	학교법인 충주미덕 학원	"
		증평군 증평읍 울리 산73-1	404,644	556,579	"	"	민선홍 외 5명	"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